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228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이 피고에게 한 2019. 6. 22.자 7,5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1,510만 원의 계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9. 6. 22.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에게 7,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의 인정 여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2.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4. 2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1. 1,000만 원, 2017. 3. 22. 1,7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7. 5. 1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고, 송금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채무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1. 24.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그 지급 명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전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17. 3. 22.자 차용증서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1,510만 원 계금반환채권의 인정 여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8. 4.경부터 계원 30명, 계금 3,000만 원, 월 불입금 1,010,000원(매월 15일

불입)인 계(이하 ‘이 사건 15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5일계의 계원으로 피고에게 2018. 4. 13.부터 파계된 2019. 6. 14.까지 15회에 걸쳐 총 15,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15,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C이 피고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2019. 6. 22. 당시 이미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곧 파계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5일계에 D과 함께 1/2 구좌를

가입한 계원으로, 2019. 6. 중순경 이 사건 15일계가 파계될 때까지 약 75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한 사실, C은 2019. 6. 22. 피고에게 750만 원의 계금을 반환(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기업은행, E은행,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15명의 계원들에 대하여 각 1,500만 원 씩 총 2억 2,500만 원의 계금반환채무, 주식회사 F에 대한 7,2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약 9,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약 5,6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앞서 법리를 통하여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인 C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채권자인 피고의 거듭된 독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에 대한 계금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